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2.

발의자 : 김주영 · 박상혁 · 박균택  
문정복 · 박정 · 허성무  
김병기 · 정혜경 · 박민규  
정진욱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농협 · 새마을금고 · 신협 등 조합법인의 19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농림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.

이에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·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89조의3).

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,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29년 1월 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